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4일, 용혜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2.9.)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0.)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1.)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2.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용혜인의원)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이 추세에 맞춰 지역 간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의 격차가 지방 인구의 순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지방소멸의 이와 같은 악순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과감한 규모의 산업 투자를 위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초광역 생활권의 구축으로 비도심 지역 주민까지 교통·의료·교육·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특별시를 출범시키고자 함.

한편으로 산업 구조 및 소득분배 구조가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시가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되,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이익공유제도를 마련함.

또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필수 생활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투입

• 제공하고 국가가 특별시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을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별개로 전남광주특별시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큼. 전체적으로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되 지방의회의 권한을 비례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의 장벽을 낮춰 크게 확대된 특별시와 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의회 및 주민 차원의 감시 및 견제 기능도 강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순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건영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